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55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김영환・임오경・진선미

서미화 • 복기왕 • 정성호

장경태 · 강준현 · 안태준

정진욱 • 한정애 • 윤후덕

문대림 • 전재수 • 박홍배

김남희 · 김영배 · 황운하

윤호중 · 임미애 · 최기상

오세희 • 이수진 의원

(239])

제안이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반영 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업무 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사 자격을 취 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업 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세무사의 직무를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준조세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행정 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
- 나. 세무사자격자의 세무법인·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등록을 의무 화함(안 제6조제1항).
- 다. 회원업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감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8 조제5항 신설).
- 라.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 마. 무자격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 바.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을 "업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를 "「부담 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
- ②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세무사의 직무로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세무대리"를 "세무사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조의 세무대리"를 "제2조에 해당하는 직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하고 자 하는 경우(세무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의 소속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
- 2. 제18조제5항에 따른 감리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12조의3제1항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 한다.
 제12조의6제1항 본문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 한

제13조제1항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대리만을"을 "제2조에 따른 직무만을"로 한다. 제14조의2 중 "세무대리의"를 "제2조에 따른 직무의"로 한다.

다.

제14조의3제1항 본문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자자가"를 "세무 관련 활동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와 위임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세무대리"를 "제2조에 따른 직무"로 한다.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대리의"를 "제2조에 따른 직무의"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한국세무사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은 적절한 재정지출, 위탁사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4 중 "세무대리 활동을"을 "세무 관련 활동을"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세무대리업무"를 "세무업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로,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세무업무등록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각각 "세무업무등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제2호"를 "제2조제1

항에 따른 직무 중 제2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세무업무등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세무대리를 한"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 한 자

제22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8호 중 "세무대리를"을 각각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무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제2조(세무사의 직무) ①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 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 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 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 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 라 설치된 부담금에 대한 행 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 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다-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 3.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 부 작성의 대행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세무사의 직 무로 한다.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제2조의2(세무사 업무의 소개・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알선 금지) -----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

원·직원에게 <u>제2조의 세무대</u> 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 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u>세무대리</u> 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 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 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 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1조(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 저 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 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u>제2</u> 조에 해당하
는 직무
세6조(등록) ①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세무
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의 소속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
합한다)
<u>.</u>
② ~ ⑤ (현행과 같음)
데11조(비밀 엄수) <u>다음 각 호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1.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

<신 설>

-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 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 여 <u>세무대리를</u>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u>세무대리</u>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 전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 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 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었던 사람
2. 제18조제5항에 따른 감리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세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u>제2</u> 조에 따른 직무를
2
제2조에
따른 직무를
<u>.</u>
· ③ (현행과 같음)
세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제2조
- <u>"2</u> 에 따른 직무를
<u> 기 </u>

Ò	받이	اما	됬	-1
三	믿	rur	Y -	坏.

② · ③ (생 략)

-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u>세무대리를</u> 하기 위하여 1 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 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 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 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 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 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u>세무대</u> 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 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 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 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 —
<u>제2조에 따른 직무를</u>	-
	-
②	-
	_
	-
	-
	-
	-
	· —
<u>제2조에 따른 직무만을</u> -	-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정	전
금지)	-
제2조에 따른 직무의	-
	-
	-
	-
<u>.</u>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 —
	-
	-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 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 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 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 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 (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 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 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 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 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 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생 략)

<u>제</u> 2조에 따른 직무를
세무 관련 활동 등 공익목
적의 수임과 수임제한대상 공
직퇴임세무사와 위임인이
②
1. (현행과 같음)

-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 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 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생 략)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기획 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⑤ (생 략)

-제2조에 따른 직무를
3
71]
<u>제</u>
<u>2조에 따른 직무</u>
③ (현행과 같음)
(3) (9) 4 2=1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제2조에 따른 직무의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제2조에 따른 직무의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제2조에 따른 직무의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제18조(설립과 감독)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략)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①・

<신 설>

② (생략)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 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 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제18조(설립과 감독)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한국세무사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세무사가 작 성한 서류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다.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 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 익법인은 적절한 재정지출, 위 탁사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조사 · 정산 · 검증 ·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세무 관련 활동을-----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 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 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의2(<u>세무대리업무</u>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u>세무대리를</u>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세무대리업무등록부</u>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 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 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

·
② (현행과 같음)
③제2조에 따른
<u> 직무를</u>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취급한다
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
급 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u>세무업무</u> 등록) ①
<u>제</u> 2조제1항에 따른 직
무를
<u>, </u>
- <u>세무업무등록부</u>
1

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 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 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증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u>세무대리업무등록부</u>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생략)
-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세무업무등록부
2
세무업무
등록부
<u> </u>
<u>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u>
중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
③
세무업무등록부
④ (현행과 같음)
⑤제2조제1항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 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 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⑥ (생략)

-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u>세</u> <u>무대리를 한</u> 자
 - 2. (생 략)<신 설>

따른 직무를
·
⑥ (현행과 같음)
세22조(벌칙) ①
1 <u>제2</u>
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2. (현행과 같음)
3.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르 의바차서 제9지에 따르

② (생략)

-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 거나 요구한 자
 - 2.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 3. ~ 7. (생략)
 - 8. 제17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9. ~ 11. (생략)

<u>직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u>
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벌칙)
,
<u><삭 제></u>
2제2조에 따른 직무를
المر ال حرال
제2조에 따
른 직무를
3. ~ 7. (현행과 같음)
8
<u>제2조에 따른 직무를</u>
9. ~ 11. (현행과 같음)